#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	성화			세목	보	단체자본 .조 및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벼 건조저장시	· RPC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25,08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우리 쌀의 품 ○ 벼 건조저장시	·질경쟁력 향성	상						
사업 주요내용	<ul><li>○ 감리, 기계 및</li><li>장비 등 지원</li><li>○ 사일로, 원료</li><li>시설 설치 및</li></ul>		기, 냉각장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기준으로 지· (벼 건조저장 RPC: 국고 20, 자부담 4 7억원(저온저	○ (가공시설현대화)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통합 RPC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집진시설 보강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기준사업비 7억원(저온저장고 3억원, 집진시설 보강 2~5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지원한도	사업비 심의에 [	다라 차등지원							
<b>재원구성</b> (%)	국고 30-4	0 지방비	20.40	융자	-	자부담	20-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구 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2017년 37,800 14,490 6,780 16,530	2018년 36,390 14,370 6,600 15,420	41 14 8,	.770 ,770 I,340 ,645 B,785	(단위: 2020 63,0 25,0 15,8 22,1	41 80 26		
담!	당기관	담당	과	담당기	<b>T</b>	연릭	<b> </b>		
농림축	·산식품부	\\\\\\\\\\\\\\\\\\\\\\\\\\\\\\\\\\\\\\			—	044-201- 044-201-			
	t식품유통공사 (aT)	미곡부 채종혁 -			차장 061-931-0758 -		1-0758		
신청시기	사업추진연도 전	사업추진연도 전년도 2월 사업시형					시군구		
관련자료									

# I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융자지원 예정

### 2. 지원 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6 참고)

##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 <농협RPC 통합 추진 방안>

- ▶ 목표 : (현행) 135개소 → (목표) 120개소
-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 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 단서 및 경과규정
    - ①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 ②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 ③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 ④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지원 RPC로 한정하여 지원

#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 (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 법인은 지원 제외
  -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 라. 지원제한 기준

- <u>해당 시·군 벼 재배면적\*이 RPC 및 DSC 진입기준\*\* 중 지역기준(RPC</u> 1,500ha, DSC 1,000ha)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벼 재배면적은 최근 시·군별 행정통계 기준
  -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 참고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핸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북수급에 해당되는 자

## 3. 지원대상

##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 <u>통합RPC에 한해 10억 이상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3억 이상의 소포장 라인 신설</u> <u>및 증설 지원 허용</u>
-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군
-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 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집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된 연계 시설물의 경우, 5년 이내 폐쇄 및 신축 불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집진시설 설치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30mg/Sm³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

### 5.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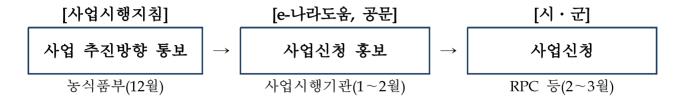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 <u>단, 민간RPC 중 신청연도 직전 2개년간 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 A등급 RPC는 통합</u> RPC에 준해 지원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 주의사항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 Ⅱ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 신청 단계 (2021년 사업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 사업자(신청업체)

###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 (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 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 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학·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 3단계 : 현장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4단계 : 발표평가 >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 대상자로 선정

##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 다. 사업비 심의 · 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u>(2020년 사업 대상</u>자)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ㆍ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
  -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 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 다. 설계 · 감리 및 기계 · 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도에 제출 (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게이는 기이 이 400/	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2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 5. 이행점검단계

##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사업비 정산≫

####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하고 <u>다음 연도 초에 시도(시군은 시도에 자료 제출)에서 농식품부에 정산보고시</u> 중요재산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사업완료시 중요재산에 보조금 취득 사업임을 표시하는 명폐를 부착하여야 함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 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세 산 명	부터	까지	시판 세안기군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 ~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5년간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이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 평가 및 환류

#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2월말까지 조사

#### < 붙 임 1 >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붙임 2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Q.	법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	 디	개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청	주	소									
자	<u>법인</u>	<u>설립일</u>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시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 <del>출</del> 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기수	00 ই	대표 브랜드			
	사 업 명					,					
신		목표 및 내용(요약)									
청	<b>)</b> 1	가공시설	계(백만원)	국	구고	지방비		자 부 딤	t		
내	사 업	현대화									
" 역	刊	<u>건조저장</u> <u>시설</u>									
·	시업별	가공시설 현대화									
	규모	<u>건조저장</u> <u>시설</u>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2개 시·군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제*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д н	농가 벼 재배면적		생산	량(톤)	생산비중(%)		
丁七	구 분 <b>농</b> 가 (호)	(ha)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도대비	

- \* 최근 3년 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del>/</del> 모(톤)	시설능력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상화 등	<i>조합공동법인,</i>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A+B+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 나. 해당 시·군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향후 5년)
  -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요약해서 기재
- 다.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	장(조곡	톤)	가공(정곡톤)	
カ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778(39元)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 라.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개량	매출액	손익	
Į	1 4	연간	수확기	조곡	쌀	गांचन	LT	
1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١								
İ								

-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구분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를 텐트텐드 				
계	-			

- 시중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	재배기술지도				
계약재배면적	약재배면적 재배품종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노기フ기취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합계						

-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가. 여건분석

○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랑					계약재배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약정		RPC 매입		ગી મોો	
	7877	물량		·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재배 단지수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	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랑(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 야적 현황, 야적벼 가공 및 판매현황, 향후 5년간 저장시설 확충 계획 등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매입 현황, 향후 5년간 매입물량 확대 계획 등
- 수확기 반입예약제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반입예약제 운영 현황, 향후 5년간 확대 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 3. 사업 시행계획

####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3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감리 및 컨설팅				
또는 벼	기계 및 장비				
건조저장시설	건축 및 토목				
	합계				

-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 \sim 10 \text{ E/hr}$ )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에서 지도, 점검

### 나.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 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 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	조건부	o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따름.
	농지법	농업(진 흥, 보호 구역)	가 능	o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 가가능.
농지, 산지 등	농어촌 정비법	기타	조건부	<ul> <li>○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 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li> <li>○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 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 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합니다.</li> <li>○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하여야합니다.</li> <li>○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합니다.</li> </ul>
도로, 하천 등	하수도 법	배수구역, 개인하수 처리시설	조건부	<ul> <li>0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li> <li>0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li> <li>0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함.</li> </ul>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ul> <li>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li> <li>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 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li> </ul>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ul> <li>전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li> <li>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li> <li>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확보 요함.</li> <li>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li> </ul>
환 경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li>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li> <li>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li> </ul>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o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파물 관법 파물 차라시 설설치 쪽진 및 주변지 약자원 등에 관 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o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 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7]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 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타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o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 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 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도로 <sup>o</sup> [개발행 o 개발 <sup>o</sup> o 공작· 경우	· 법 제44조에 게 2미터 이 위관련] 행위허가운영 물 설치 시 개발행위(공	상 접하도록 통지침 3-3-2- 무게 150t, -작물의 설치	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구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지)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	•	1 -1 - 11 - 1 - 1	
종합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 , - ,	-1 07	
, _			이 있는 경-	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u>및 컨설팅</u>						
- 기계공사 김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u>및 컨설팅</u> 합계						
2. 기계 및 장비	가)	나)	다)	라)	마)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목및생등/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벼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바)	사)	아)	자)	차)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_				
-						
-						
소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入	나업 산	]청년	도(2	0 <b>2</b> 0년	<u>l</u> )							X	·업취	신년	토(2	0 <b>2</b> 1년	<u>a</u>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			7,1	, –	7 -7'	17 -	-1 0		. 17	- 1	-1 ·	1 = 1												

<sup>\*</sup>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 마.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 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	<u> </u>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그	액
30 <del></del>	ㅁ색	30 17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ㅇ 부지매입		○ 자부담 - <u>출자액</u> (자본금)		
ㅇ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 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 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 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 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 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카)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타)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파) ※ 지자체 제출서류
  - 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 붙 임 2 >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집진시설 개보수) 신청서

	업치	체명				사업자-	등,	록번호				
	대3	포자				전회 (휴1	_					
신	주	소										
청	법인	설립일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자	사업조	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 <del>출</del>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u>ن</u> 00	<u>-</u>	대표 브랜드	
	집진 시설	RPC	집진시설	현황(용학	랑 모	는 규모 등	<i>등</i> )	및 설치년도(	또는 기	<u> </u>  上	<i>수 시기)</i>	
	현황	DSC	집진시설	현황(용학	량 또	는 규모	<i>등</i> )	및 설치년도(	또는 기	上	<i>수 시기</i> )	
.1			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신 청 내	사역	겁비										
5 명	· ·	섭별 ·모	,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첨부>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 후 관리시설

위치	건	조(조곡	톤)	저	장(조곡	가공(정곡톤)	
カヘ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18(성취단)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 ha)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_

○ 집진시설 설치 현황

설치 위치(용도)	집진기 종류	설치년도	집진휀용량 (m³/min)	동력(HP)	노후 상태 (기능 저하 내용)
현미부	싸이클론	1998	120	7.5	
원료조선기	백필터	2001			
정미기	통합집진기				
왕겨풍구					

- \* 설치위치 : 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현미.백미석발기, 정미기, 연미기, 원료투입구, 원료조선기, 원료정선부, 건조기 중 해당사항 작성(예시중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별도 입력 가능 단, 이송기기, 탱크류 등 집진시 해당 공정 작성)
- \* 설치년도 : 수리 또는 교체 등 보수가 이루어진 년도 표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준공년도 표기)

### 2.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집진시설 개보수 필요성
- 노후도, 집진방식, 민원 발생 등 개보수 필요성 기재
-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기존 집진시설 교체 대상 상세 내역(집진기 개수, 교체 시설, 집진방식 변경 등)
- 개보수 소요기간, 개보수에 따른 기존 시설 가동중단 등 피해 최소화 계획
- 개보수에 따른 개선 효과 등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천워)

		_/.	1 11 11	신달 네	7/1/	(단귀: 선펀)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						
소계	71)	1-17	۳۱۱	7]\	HJ/	
2. 원료투입시설	거)	너)	더)	러)	머)	
-						
<u>-</u> 소계						
3. 건조시설						
-						
-						
소계						
4. 저장시설						
-						
- x ¬il						
소계 5. 가공시설						
5. 7F67F2						
_						
소계						
6. 소방 및 전기공사						
-						
-						
7. 기타						
-						
- 2 -1						
소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 사업추진 일정(계획)

				入	나업 산	]청년	도(2	0 <b>2</b> 0년	<u>l</u> )				사업추진년도(2021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			7,1	, –	7 -7'	17 -	-1 0		. 17	- 7	-1 ·	1 = 1												

<sup>\*</sup>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 3.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 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 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관련 사진(전경사진 및 세부사진), 기존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 명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
  - 버)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서) ※ 지자체 제출서류
    - 어)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 붙 임 3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서면&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 <u>지역</u> 단위 <u>식량산업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u> 한가?
		- 지역내 <u>식량산업 구조와 사업신청자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u> 분석하고 있는가?
	<u>15</u>	- 생산구조 발전방안 <u>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u>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 유통구조 발전발안 <u>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u>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20점)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u>식량산업을 발전적으로</u> <u>육성</u> 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시·군 단위 생산조정제 참여계획 및 목표는 적절한가?
	5	- 지역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매우 우수 : 15% 이상, 우수 : 10% 이상, 보통 : 7% 이상, 미흡 : 5% 이상, 매우 미흡 : 5% 미만)
		○ 고품질 원료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10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2. 세부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추진계획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및 전략 (50점)	10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10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10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수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10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 실적 및 계획
		-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부지선정 적절성>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10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الحال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3. 시행 계획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 ~ ~ ~ ~ ~ ~ ~ ~ ~ ~ ~ ~ ~ ~ ~ ~ ~ ~		<건축 및 시설 적절성>
(20점)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0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R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4. 종합 의견	10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와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한가?
(10점)		○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 최종점수 산정방법 >
합 계	100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의견서

□ 평가대상 :	□ 평가자 :	(서명)
		,

평가 항목	배점	평가의견	평점
1. <u>식량산업</u> <u>종합계획</u> 연계성	20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		
3. 시행 계획 적절성	20		
4. 종합 의견	10		
합 계	100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농협 / ○○○법인 등]

7	항 목	내 <del>용</del>	예	야나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_,,,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0.41	가공시설	저)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운영 실적		처)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커)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터)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벼 건조ㆍ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저장시설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1 '	법인요건 농협조직)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 (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1 01	11-11-1-7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대-	제한 기준 부분 '19년 부터 적용)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 ('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d	항 목	내 <del>용</del>	예	아니오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류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가공시설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 이 80% 이상입니까?		
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u>기존 시설</u> 증축입니까?		
규모	   벼 건조·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저장시설	단순 개보수입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٨	<b>}업부지</b>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カレラ	세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II ㅁ기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자 부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담	刊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i	항 목	내 용	예	아
	농협조직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ਹ <b>ਦ</b>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공통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시설	가공시설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 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검토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벼 건조ㆍ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 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u> </u>	구비서류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		
		3. 조감도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항 목	내 <del>용</del>	예	아니오
	5. 비교 견적서( <mark>나라</mark> 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6. 법인등기부등본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9. 지적도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14. 최근 5년간 <u>결산재무제표</u>		
	15. <u>최근 5년간</u> 벼 매입량		
	16. <u>최근 5년간</u>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19. 기본요건 점검표		
	20. 자부담금 <u>확보계획서</u>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25. <u>농</u> 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6.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sup>\*</sup>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 붙 임 6 >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 I. 추진배경

- □ 지자체별로 쌀 이외 식량작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부재 및 지역 내 적정투자 소요 검토 미흡,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하에서 체계적인 투자 부족
- □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 O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 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위주로 수립
  - O 지자체 주관으로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 □ 그동안 5개 시범지역<sup>\*</sup> 선정 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모델을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 5개 시범지역(당진, 김제, 익산, 해남, 경주) 선정 후 예시 모델 제시
- O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8.3 ~ 8월
- O 권역별 순회 설명회(3개 권역, 300여명) : '18.9.4 ~ 9.7(3일간)
- O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등 안내 : '18.9.11(수)
- O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18.11.19(월)
  - 개별 시 군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실시 : '18.9월 ~ 11월

- O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실시 : 4회, 42개소 선정
  - '18년 종합계획 평가.선정(**5개소**\*) : '18.12월
  - \*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경북) 경주시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0개소**\*) : '19.3월
    - \* (경기) 안성시, 파주시, (충남) 홍성군, 공주시, (전북) 김제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고흥군, (경남) 산청군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재평가.선정(**12개소**\*) : '19.6월
  - \* (세종) 세종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전북) 군산시, 진안군,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 안동시, (제주) 제주
  - '19년 하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5개소**\*) : '19.12월
  - \*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전북) 익산시, 부안군, (전남)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함양군, 창녕군

## Ⅱ. 식량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 □ 주요 내용

-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단위 식량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 포함
- O 지역 내 식량산업에 대한 생산 및 유통현황 기초분석, 품목별 생산 조정제에 따른 생산계획 등
- 미곡분야 생산 및 유통 체계화는 거점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계약 재배단지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농가조직화 방안, 생산지도 계획, 마케팅 전략,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식량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는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방안, 마케팅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 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제시

#### 기본방향



## □ 수립절차



- (가칭)식량산업 발전협의회 구성현황
- (가칭)식량산업 실무협의회 구성현황
- 혐의회 운영방식 및 운영체계
- 식량산업 종합계획 추진경과

## (3)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 지역 식량산업 SWOT 분석
  -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 연차별 로드맵
  - 성과지표 및 자율지표 설정

# 6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연차별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 지역내 시설투자 적정성 검토
- 지자체 및 사업자 자체사업 투자계획
-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시설수요)
- 총괄 투자계획

## (2)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 식량작물 생산 및 품목별 조직화 현황
- 인증농산물 생산현황(GAP 및 친환경)
- 품목별 생산조정제 및 생산계획
- 산지유통조직 및 유통, 브랜드 현황
- 시설투자 및 지원사업 현황
- 식량작물 분야 예산현황(최근 3개년)

## 4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기본방향
- 연차별 추진계획, 역할분담계획
- 조직운영계획, 농가조직화 계획
- 마케팅 추진계획, 브랜드 육성계획
- 시설운영 효율화 계획
- 생산지도 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등

## (5) 밭작물 생산-유통체계화

- 타작물 전환계획,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 연차별 추진계획, 역할분담계획
- 농가조직화 계획, 마케팅 계획
- 시설운영 효율화 계획
- 생산지도 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등

## □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 체계

- O (성격)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O (시간적 범위) 수립·승인년도부터 5개년
-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주체)
  - 계획 수립은 지자체·조직이 자율적 수립
    -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 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 품목: 미곡, 밭작물(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원예작물은 제외
- O (재정적 범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과대 계획은 지양
- O (계획 선정·평가)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및 이행평가 실시
  - (심사) 3단계(서면-현장-발표) 나눠서 심사평가 진행
  - (승인요건)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승인
- O (계획의 효력)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PC 및 DSC,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아래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 하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O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연계 지원사업(안)

사업명	세부사업	연계방식	적용시기	비고
2222222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사업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2020년	
) 0 0 1 1 0 1 1	사업다각화	신청자격	2020년	
고품질쌀	RPC 시설현대화	신청자격	2019년	] 보조 ]
유통활성화사업	DSC 시설지원	신청자격	2019년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가 점	미정	
공공비	축미 배정	우선배정(일부)	미정	ᅰㄷ
정부보	급종 공급	우선배정(일부)	미정	- 제도
RPC H	<b>부매입자</b> 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	2019년	융자
농기	계사업	가 점	미정	

- O (평가환류) 先 계획 後 지원 원칙하에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 점검
  - 이행평가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목표조정 및 변경, 보완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이행평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지원 보류

### Ⅲ. 선정·평가절차

-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실시
- □ 평가위원 구성방법
  - O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인으로 구성
  - O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 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O 내부위원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
- □ 단계별 평가절차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Rightarrow$	농식품부 또는 aT, 외부평가위원	$\Rightarrow$	내·외부 평가위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퍼)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 1단계 : 서면평가(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 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
  - ※ 서면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평가 1회 면제
- 2단계 현장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O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 ⑤ 밭작물 생산 · 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현장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현장평가 1회 면제
- 3단계 발표평가(현장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O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O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 ⑤ 밭작물 생산 · 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선정

# < 참고 1 > 목표 지표(안)

## ○ 공통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들녘경영체 재배면적(비중)	
	농가조직화	계약재배(약정출하) 면적(비중)	
		공동영농 면적(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각 항목별 제시
	저거 . 그뜨지 세시	쌀 생산조정 면적(비중)	
	적정·고품질 생산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비중)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비중)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 용량(비중)	상온, 저온 구분
		관내 RPC 수	통합 등
		RPC 취급량 대비 공동(대표) 브랜드 출하량(비중)	
밭작물	노리코기위	밭작물경영체 재배면적	공동 출하조직
	농가조직화	공동출하실적(매출액)	
	고품질・안전 생산	품목별 생산면적 또는 비중 / 계약재배 면적 또는 비중	
	으토 . 기고 . 人비	관내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경유율	품목별 기준 설정
	유통·가공·소비	-동ㆍ가공ㆍ소비 공동브랜드 판매실적(매출액)	

# O 자율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가조직화	대표브랜드 계약재배 면적(비중)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적정·고품질 생산	질소질 비료 저감율	저감 계획
		공동육묘량	
		생산량 대비 현대화시설 RPC 정곡출하량(비중)	
	유통・가공・브랜드	고품질쌀완전미 비율	
		지역 내 소비량	로컬푸드, 급식 등
		공동출하실적(매출액)	
	농가조직화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작업 기계화율	
	고품질・안전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b>밭작물</b>			
	유통・가공・소비	식량작물 전문 유통조직 실적(매출액)	품목별 기준 설정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지역 내 소비량	

# < 참고 2 > 선정지표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1. 사업계획	 수립고	정의 적절성(10점)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 식량산업협	의체 등	을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점)	2~10	
1. 사업계획	* 지자체, 거	점유통결	조직, 참여조직, 농가조직 등의 역할분담 체계는 적절한가?(5점)		
(25점)	1-2.사업목표외	가 추진	전략의 적절성(15점)	2~10	
	* 해당지역 특	*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0점)			
	* 지자체 자치	네 사업·	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5점)	1~5	
		농가조	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9	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	2~10	
			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적절하게	2 10	
	2–1.		립되어 있는가?(10점)		
	미곡분야	RPC 7	<sup>니</sup> 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	2~10	
	생산유통	* RP	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2 10	
	체계화	브랜드	육성 계획		
	추진계획	* 거?	덕(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는	1~5	
2. 실행계획	(30점)	적:	절한가?(5점)		
(60점)		적정시	설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계획		
, —,		* RP	C 및 DSC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1~5	
* 지역별		제	시되었는가?(5점)		
여건에 따라		타작물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미곡과		* 타	작물 전환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지역단위 식량작물의	2~10	
밭 식량작물		전략	략품목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10점)		
과의 점수		농가조	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배점 조정	2–2.	* 공	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조직화, 이를 위한	1~5	
가능	밭 식량작물		산지도는 적절한가?(5점)		
	-		대표조직 육성방향		
			목별 대표 유통조직은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대표조직 육성을	1~5	
	추진계획		한 계획은 적정한가?(5점)		
	(30점)		차별화 계획	1~5	
			목별 마케팅 차별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5점)		
			영 효율화		
			지유통시설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	1~5	
			었는가?(5점)		
	3-1.연차별실행계획(5점)			1~5	
3. 투자계획	* 연차별 실형	행계획은	<sup>2</sup>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한가?(5점)		
(15점)	3-2.종합평가(1	10점)		2~10	
	* 종합적으로	. 고려힘	2 10		
	GAP, 친환경	0~5			
가점	* GAP, 친환경				
(10)	식량산업발전	을 위한	· 조례 등 활성화 노력	0 5	
			기타 노력 2점 (최대 5점)	0~5	
합계		,		100점(110점)	
	l .				

# < 참고 3 > 이행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이행 실적 (25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10점)  * 이행실적보고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15점)		
	1-2.자율평가보고서 적절성(10점)  * 자율평가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2. 성과 목표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이행하였는가?(10점)	/~  ()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이행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이행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 리체계를 이행하였는가?(5점)	1~5
달성도 (60점)		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 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2. 밭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 선정 *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의 생산계획은 적절하게 추진 하였는가?(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지도는 추진하 였는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실적은 향상되었는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실적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추진실적은 보유하는 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3. 연차별 추진성과 - (15점)	3-1.연차별 실행관리 방안(5점) * 연차별 사업추진 달성을 위한 실행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5점)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10점)		
합 계			100점